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화장 후 유골의 골분을 뿌려서 장사하는 산분장(散粉葬)을 자연장에 포함하고, 대통령령으로 정한 구역에 장사할 수 있도록 하며, 묘지 등의 설치 제한 지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다른 수산자원보호구역과 해양환경관리법에 다른 환경관리해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2024.1.23.) 및 시행(2025.1.24.)될 예정임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,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화장 후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구역을 정함(안 제2조)

- 1) 묘지·화장시설·봉안시설·자연장지 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장소나 시설
- 2)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상 떨어진 해양

나.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때의 방법·기준을 정함(안 제8조)

다.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추가(안 제22조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및 제2조의2를 각각 제2조의2 및 제2조의3으로 하고,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(화장한 유골의 골분(骨粉) 을 뿌릴 수 있는 구역)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.) 제2조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”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.

1.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이 마련된 묘지·화장시설·봉안시설·자연장지
2. 해안선(도서의 해안선은 제외한다)으로부터 5km 이상 떨어진 해양.
다만, 다음 각 목의 구역·해역은 제외한다.
 - 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
 - 나. 「해양환경관리법」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관리해역
 - 다. 「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
 - 라. 「어장관리법」 제5조에 따른 어장관리해역
 - 마. 「항만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의 수상구역

바. 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46조에 따른 보호수면 및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

제2조의2(중전의 제2조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8호”를 “제2조의2(화장시설의 부대시설) 제2조의2(화장시설의 부대시설) 법 제2조제8호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는 경우
2.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리는 경우

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7조제4호”를 “법 제17조제5호”로 한다.

- ① 법 제17조제1호에서 “녹지지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2조(화장시설의 부대시설)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8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”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</u> 1. ~ 6. (생략) <u><신설></u>	<u>제2조의2(화장시설의 부대시설)</u> <u>제2조의2(화장시설의 부대시설)법 제2조제8호-----</u> ----- ----- ---. 1. ~ 6. (현행과 같음) <u>제2조(화장한 유골의 골분(骨粉)을 뿌릴 수 있는 구역)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.) 제2조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”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.</u> <u>1.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이 마련된 묘지·화장시설·봉안시설·자연장지</u> <u>2. 해안선(도서의 해안선은 제외한다)으로부터 5km 이상 떨어진 해양. 다만, 다음 각 목의 구역·해역은 제외한다.</u> <u>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</u>

제2조의2 (생 략)

제8조(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)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자연장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(骨粉)을 묻되, 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한다.

나. 「해양환경관리법」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관리해역

다. 「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

라. 「어장관리법」 제5조에 따른 어장관리해역

마. 「항만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의 수상구역

바. 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46조에 따른 보호수면 및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

제2조의3 (현행 제2조의2와 같음)

제8조(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) ① -----

1.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는 경우

가.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되, 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한

2. 화장한 유골의 골분, 흙, 용기
외의 유품(遺品) 등을 함께 묻
어서는 아니 된다.

다.

나. 화장한 유골의 골분, 흙,
용기 외의 유품(遺品) 등을
함께 묻어서는 아니 된다.

2.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리
는 경우

가.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제
2조제1호의 장소에 뿌릴
때는 골분이 날리지 않도록
잔디를 덮거나 깨끗한
흙과 함께 섞어 뿌린 후 지
면에 흡수될 수 있도록 충
분히 물을 뿌려야 하고, 시
설에 뿌릴 때에도 골분이
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
다.

나.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제
2조제2호의 해양에 뿌릴
때는 골분이 날리지 않도록
수면 가까이에서 뿌려
야 하고, 다른 선박의 항행
과 어업행위, 수산동식물
의 양식 등을 방해하지 않
아야 한다. 이 경우 용기를
사용하지 않고, 화장한 유
골의 골분, 생화(生花)만을

1. ~ 11. (생략)

1. ~ 11.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471